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양재혁
전화 02-3399-4866 / 팩스 02-3399-4801

보도자료
2022. 5. 26. (목)

제 목

고용보험 실업급여 편취시범 수사결과
- 전문 브로커 구속기소, 부정수급자 44명 약식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(제11조 제2항 제3호)

※ 2022. 5. 25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○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유광렬)는,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, 전문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정수급자 44명을 약식기소하였음

- 검찰은 브로커가 약 4년에 걸쳐 가정주부, 취업준비생, 친구 등 총 78명을 모집, 치킨집 7곳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약 5.8억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, 그 절반을 받기로 한 사실을 밝혀내 직구속하고,
- 노동청에서 송치된 32명 외에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, 44명을 약식기소하고,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납한 13명은 기소 유예, 3명은 기소중지, 18명은 이송하였음

○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문브로커가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,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OO(52세, 세무사사무소 사무장), BOO 등 허위근로자 44명

○ 공소사실 요지

- AOO은 '16. 2. ~ '20. 10.의 기간 중 치킨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세무신고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회삼아, 甲이 운영한 7개의 치킨집에 BOO 등 총 79명의 근로자(피고인 AOO 포함)가 일을 하였던 것처럼 甲 몰래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직처리하여 위 허위근로자들로 하여금 합계 약 5.8억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, 그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취[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고용보험법위반,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 등]
- BOO 등 허위근로자 44명은 각각 위 AOO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편취[사기, 고용보험법위반]

2

주요 수사경과

- '21. 7.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, AOO 및 허위 근로자 32명 불구속 송치
- '21. 11. ~ 12. 서울북부지검, AOO에 대한 계좌추적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 실시
- '21. 11. 노동청 송치 허위근로자 32명 약식기소 등 처리
※ 4명 약식기소, 10명 기소유예(부정수금액 반환), 주거지 관할 검찰청 이송 18명
- '21. 12. 14. AOO 구속기소(11. 26. 직구속)
- '22. 2. ~ 5. BOO 등 허위근로자 46명 추가 입건 및 약식 기소 등 처리
※ 40명 약식기소, 3명 기소유예(부정수금액 반환), 기소중지 3명(소재불명)

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악용한 사례 엄정 대응

- 현행 고용보험법상 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, ② 채용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소급하여 가입신고가 가능하며,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AOO은 마치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(동네 주민인 가정주부, 친구, 취업준비생 등)에게 '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받은 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'고 제의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후,
 - 평소 알고 지내던 치킨집 주인인 甲 몰래 이들을 치킨집 근로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수급액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합계 약 5.8억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하였음
- 검찰은 송치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위 甲이 운영한 치킨집 직원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더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을 통해 총 46명을 추가 적발하는 등 적극적 보완수사로 국가재정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였음

노동청과의 협력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

- 검찰은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,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

제도개선 등 통보 내용

-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시 실제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징구하게 하고,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지체한 경우 그 사유 소명 요구 등